

# ESG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과 의의

홍성수

Human Rights

# ESG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과 의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요약문

## S U M M A R Y

민주화 이후 한국은 인권 관련 법제를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했다. 여성 인권, 장애 인권 등 각 영역의 인권 문제를 다룬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부터,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다양한 법제를 제정했다. 그에 따라 국가가 다루는 인권정책의 영역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없었기에 인권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인권(정책)기본법’이었다. 2012년부터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법안에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기업과 인권, 인권교육,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국가인권 추진체계를 정돈하고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법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인권’ 논의는 인권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등에서 조금씩 발전해왔다.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업과 인권 논의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어떤 법률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록 짧은 내용에 불과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지원할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에는 인권침해 금지, 인권침해 관여 금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을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ESG 관련 논의에서 환경(E)이나 지배구조(G)에 비해 사회적 가치(S)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특히 기업의 인권책무에 관한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SG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과 의의

# 목차

## CONTENTS

# ESG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과 의의

<b>I.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논의의 역사</b>	<b>07</b>
1. 2012년 유남영 인권위원의 인권기본법 제정안	08
2. 2013년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	12
3. 2014년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안)	15
4. 2018년 인권위 인권기본법(안)	18
5. 2020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20
6. 2021년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22
7. 2022년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인권정책기본법(안)	23
<b>II.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b>	<b>25</b>
1.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의 수립	25
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26
3.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26
4. 기업과 인권	27
5. 인권교육	27
6. 인권의 날 지정	27
7. 국제 협력과 민간단체 지원	28
<b>III.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기업과 인권 논의</b>	<b>29</b>
1. ‘기업과 인권’ 논의의 역사: 인권경영, CSR, ESG	29
2. 인권정책기본법과 기업과 인권 논의	32
3. 기업과 인권 법제화를 위하여	36
<b>IV. 결론</b>	<b>38</b>
1. 인권정책기본법의 개요	38
2.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의의	39
3. 총평 및 향후 과제	41



# I.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논의의 역사

□ 인권정책기본법은 2012년 유남영 인권위원이 처음으로 그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법무부) 차원에서의 입법 시도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시도가 각각 있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가 각각 입법을 준비하다가, 2021년 12월 정부 발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이후 2022년 1월에는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이 발표된 바 있음. 그동안의 인권정책기본법 논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2년: 유남영 위원 인권기본법 제안
-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포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 마련
- 2013년: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의원 추미애 주최
- 2014년: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국회의원 추미애 주최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인권기본법 추진 포함
- 2018년: 인권위, 인권기본법(안) 제정 자문회의 개최 및 초안 마련
- 2020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 발표
- 2021년: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실무협의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입법예고
- 2021년: 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
- 2021년: 법무부/인권위 주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 2021년: 국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김영배 의원실 주최
- 2021년: 인권정책기본법(안)발의(정부 발의, 2021.12.30.)
- 2022년: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22.1.28.)

## 1. 2012년 유남영 인권위원의 인권기본법 제정안

-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201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1)</sup>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업무계획에 인권기본법 추진을 명시했음.
- 유남영 위원은 인권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전세계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인권기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을 확장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권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해야 하는데, 국가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여 제안해야 함.
  - 셋째, 이러한 인권정책과제를 논의할 때, 현재의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라는 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과제로서의 ‘인권’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UN 등의 국제 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국가인권기구<sup>2)</sup>, 시민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약칭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국내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국제적인 조건, 국내적인 정치기회구조, 경제적인 조건, 시민사회의 역량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1) 유남영, “인권기본법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129호, 2012 참조.

2) 국가인권기구(NHRI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1991년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정책, 인권침해구제, 인권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를 뜻함. 유엔의 권고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음.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자세한 것은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제58호, 2010, 151-194쪽; 홍성수, “국가의 인권제도과 기구”, 김중섭 외, 인권제도와 기구: 국제사회·국가·지역 사회, 오름, 2018 참조.

요인으로 거론되는데,<sup>3)</sup>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권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연결하여 인권의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 과제로 ‘인권기본법’을 제안함.

- 여기서 ‘기본법’이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한 형태로서, 법의 목적, 기본용어의 정의,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추진체계, 자원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임.
- 기본법은 관련 법률들을 지휘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하는 셈이며, 헌법과 법률의 사이에 있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음. 즉 인권기본법은 인권 관련 세부 법률들과 헌법 사이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음<sup>4)</sup>.
- 현행 법률 중 기본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건설사업기본법」, 「문화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각 분야에서 76건(2022년 10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에 이를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입법 유형이며, 인권에 관해서도 기본법의 제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음.

□ 유남영 위원은 인권기본법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했음<sup>5)</sup>.

**〈인권기본법의 핵심 내용〉**

- UN인권기구에 제출하는 각종 국가보고서의 제출 및 UN인권기구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논의, 토의하는 절차의 제도화
-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인권기구의 설립
-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 국내외의 인권옹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 차별금지의 원칙
-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3) 정진성 외 2인,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8쪽 참조.  
 4) 기본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해서는 황승홍,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5) 이하 설명은 유남영 위원의 제안과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필자의 의견을 첨부한 것임. 우기택, 인권기본법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우기택,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제, 674호, 2016; 홍관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 2018.

##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 UN인권기구에 제출하는 각종 국가보고서의 제출 및 UN인권기구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논의, 토의하는 절차의 제도화, 즉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19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1990),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고문방지협약(1995), 아동권리협약(1991), 장애인권리협약(2008)<sup>6)</sup>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이들 국제인권규범은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국제회의의 참가, 국가보고서 제출, 권고 등의 관행이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 ○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수립 이행 절차의 법제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각국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으로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7-2011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2022년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했음.
- 문제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이 핵심과제만 100가지에 이를 정도(제4차 권고안 기준)로 방대하며, 거의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이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2006년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하는 틀을 마련한 바 있음. 이 훈령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

6) 연도는 가입/비준일이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에는 미가입된 상태임.

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이행, 평가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그리고 그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이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관할하는 조직과 절차의 법적 위상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으며, 이를 법률 수준에서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의 법제화

- 그동안 인권교육이 사회 곳곳에서 확대되어 왔으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인권영향평가란 국가가 입법 등을 할 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로써 참여정부 시절에 그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음.

○ 지방정부와 인권

- 인권문제는 국가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사무이기도 하며,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함<sup>7)</sup>.
- 지방 차원에서의 지방인권레짐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이나 인권정책 추진, 인권기구 설치 등의 과정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음.

○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등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가 국내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

7)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2012, 305-337쪽 참조.

-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중,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인권 실현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인권침해의 공범을 회피할 의무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개발원조와 인권

- 해외개발원조를 사용,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개발원조 시 인권을 고려해야할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인권 활동에 대한 지원

-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의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해석상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규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

- 차별금지 원칙을 법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인권기본법에도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 위와 같은 과정에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인권레짐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2. 2013년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

□ 유남영 위원의 제안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의 구축'의 세부과제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채택했음.

○ 이에 따르면, 법무부가 2013년 2월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2013년 8월에는 국가인권

정책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국정과제에 따라, 2013년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을 성안하였음.

-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수립·시행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권고 이행에 관한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음.

□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인권정책기본법의 핵심 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 인권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 인권영향평가 도입
-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
- 국가인권정책개발원 설립
- 유엔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근거 도입
- 국가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 도입
- 인권단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국가: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지역인권정책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 실적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과 공개
- 국가·지자체는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종합 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도입

- 정책 수립·시행 및 법률의 제·개정 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국가·지자체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

## ○ 국가인권정책조정위원회·실무협의회 설치

-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30인 이내)
- 국가인권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

-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인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 ○ 국가인권정책개발원 설립

- 인권정책 정보 기반 구축과 정보 제공 및 국가보고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설립

## ○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 도입

-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반영
- 국가·지자체는 각급 학교, 인권교육 관련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의 연구와 개발, 활동 및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유엔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근거와 절차 도입 및 국가 의무 법제화

- 국가는 국가보고서 심의 및 개인진정에 따른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인권조약의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총괄 작성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 국가보고서 심의는 보고서를 작성한 부처 장관이 준비하고 외교부는 협조해야 함.
- 심의 종료 후 이행계획을 3개월 내에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인권단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지자체는 인권단체의 인권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가능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가능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

-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기념일로 하고 그로부터 1주일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 실시

□ 평가

-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과제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추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유남영 위원의 제안과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나, 이를 조문 형태로 확정하여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유남영 위원의 제안이 인권위가 하던 국가인권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인권레짐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던 반면에,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가인권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법안 전체적으로 인권위의 역할보다는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음.
- 인권정책책임관 지정이나, 인권실태조사 규정, 국가인권정책개발원 설립,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 등은 새로운 제안으로서 의미가 있음.
- 차별금지의 원칙, 기업과 인권 규정, 개발원조에서 인권의 고려, 지방정부와 인권 등 인권기본법에 담길 수 있는 새로운 인권의제들이 누락된 점은 아쉬운 점임.
- 정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쳤으나, 최초로 정부의 공식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3. 2014년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안)

- 추미애 의원은 2013년 9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014년 9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인권기본법(안)을 성안하였음.



□ 법안의 제안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헌법적 가치이며, 최근 인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에서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아동·청소년인권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가·지자체의 인권 보호·증진 의무와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인권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이 없는 상황임.
- 인권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상 인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며,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 등이 포함된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인권영향평가: 국가·지자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자체의 인권 증진 의무: 국가·지자체는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인권교육: 국가·지자체는 인권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국가·지자체는 직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직장 내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제협력 및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가·지자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제적 인권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지자체와 인권: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위하여 독립된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인권 인력 양성 지원: 국가·지자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평가

- 이 법안은 기존의 법무부 법안과 큰 틀에서는 같은 취지를 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법무부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법무부로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있음.
  -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인권위가 정책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지자체가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이라는 항목을 두어, 국가·지자체가 직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직장 내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립’이라는 항목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보호와 향상,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정책의 이행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위하여 독립된 기구(“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지자체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의 입장에서 마련된 법무부 법안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권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권위로 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함.
- 국가·지자체의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의무 규정,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 규정, 지자체 인권기구 설립 규정, 인권 전문인력 양성 규정 등은 범국가적인 인권레짐 구축을 위해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될 만함.
- 다만, 인권정책책임관, 국가인권정책조정위원회·실무협의회 설치, 인권연구 또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법안은 입법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법안 완성 단계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결국 발의되지는 못했으며, 입법은 다시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음.

## 4. 2018년 인권위 인권기본법(안)

- 2014년 추미애 의원의 인권기본법(안) 성안 이후 인권정책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에 인권기본법 추진을 포함시키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항목에 소관부처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권위로 하는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시되었음.
  - 그리고 2018년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이행 연간보고서 초안’에는 국정과제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으로 인권기본법 제정이 언급되었음.
  
-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인권위가 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음.
  - 2017년 10월에는 상임위에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이 보고되었음.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해 6차례의 자문회의가 열리고 서면자문을 받았음.
  - 2018년 1월에는 국무회의에 소관부처를 인권위로 하는 인권기본법(안) 국회 제출 계획이 보고되었음.
  - 2018년 7월부터 10월에는 시민사회단체, 주요 부처 및 광역지자체 관계자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였음.
  - 2018년 10월에는 인권기본법 인권위안이 성안되었음.
  
- 인권위는 인권기본법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인권 정책 일관성 담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인권 관련 법령·제도가 확산되었으나, 인권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임.
  - 국가인권추진체계 제도화 필요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기타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인권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인권추진체계 구성원들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권위의 인권기본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수립·이행하고, 인권위가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함.
  - 국가인권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위원장의 출석, 발언권, 의안 제출권을 부여함.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함.
- 인권영향평가 도입: 국가·지자체의 법령, 정책 또는 사업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인권위는 이를 검토하여 권고할 수 있게 함.
- 국가인권통계 도입: 인권 기초 통계를 위원회가 작성하고 관리하며, 인권지표(지수)를 연구하고 개발함.
- 인권연구원 설립: 인권위의 인권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인권통계 도입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기업과 인권: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등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규정
- 인권교육원 설치: 인권교육 기획,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권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권기금 설치: 인권 관련 사업이나 교육 등을 위한 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인권위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 인권의 날: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 지정

## □ 평가

○ 인권위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별점이 있음.

-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존중하여 수립하게 하고, 법무부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인권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며, 인권위가 기본계획의 이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와 법무부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조정함.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를 적절히 명문화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교육 의무도 규정함.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가 채택하거나 제정하는 결의, 결정, 권고, 선언, 지침 등을 열거하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존중하고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원상회복 등의 조치, 국제인권기구 접수 시 관보 게재, 인권위의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점검 및 독려 등 자세한 규정을 둠.
- 처음으로 국가인권통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권위에 인권연구원과 인권교육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인권위가 인권레짐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했음.
-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등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규정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법무부 법안에 비해 인권위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추미애 의원 법안에 비해서는 법무부와 인권위의 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려고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에 대한 상세한 법제화, 국가인권통계, 기업과 인권, 지자체 인권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인권정책기본법이 인권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음. 특히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인권위에 법안 발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음. 아쉽게도 이 법안 역시 향후 논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 5. 2020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 법무부는 2020년 11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절차에 들어갔음.
-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률적 근거 마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절차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
    -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가 위원장, 30인 이내의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 요청할 수 있음.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
  -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하고, 추진실적 점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
-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
  -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노력 의무화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
  - 국가·지자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을 장려할 의무가 있음.
  - 기업에게 인권경영을 실천할 의무와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국가, 지자체, 유치원 및 각급학교, 공직 유관단체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권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

#### □ 평가

-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에 비해 인권위와의 역할 분담에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 법안이며, 인권위 법안과 크게 부딪히는 내용이 사라지게 되었음.
  - 인권위 법안과 2020 법무부 법안의 차이는, 인권실태조사의 주관 기관, 인권연구원 설치, 인권교육원 설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기금 정도임.
-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긴밀한 상호협조가 필수적인 것을 고려하면, 양 기관 사이의 이견이 줄어든 것은 향후 법 제정을 위해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6. 2021년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 2021년 5-6월에는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 실무협의를 했으며, 인권정책기본법을 공동 입법예고 하기에 이르렀음. 7월에는 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8월에는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음.
- 그 결과 2021년 12월 30일 정부 발의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발의됨(의안번호 14195).
- 정부 발의의 형식을 갖췄지만, 인권위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성안한 것이고 두 기관을 공동 소관부처로 한 것 이어서, 사실상 인권위-법무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이하에는 “2021년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안”으로 약칭함).
-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점검·평가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인권교육의 실시와 지원
- 인권의 날의 지정

□ 평가

- 2021년 인권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은 2012년 유남영 인권위원의 제안 이후 그동안의 법무부, 인권 위, 시민사회,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논의를 총망라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춰서 탄생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음.
  - 특히, 인권위와 법무부의 권한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세부 쟁점 중에서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연구원, 인권교육원, 인권통계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었음.
-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학계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탄생한 법안이고, 공식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 되었음.

## 7. 2022년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인권정책기본법(안)

- 2021년 12월에는 김영배 의원실 주최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가 열렸으며, 2022년 1월 28일에는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발의되었음(의안번호 14620).
  -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김영배, 김영호, 김철민, 민형배, 박광은, 소병철, 설 훈,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 이상섭 의원 등 12인임.
-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인권보호체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을 명시함.
-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

□ 평가

-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인권상황 백서’를 발간하도록 한 점을 제외하면, 2021년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차이가 없음.
- 의원발의로도 법안이 공식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II.

#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현재 인권정책기본법(안)은 2021년 인권위·법무부 법안과 2022년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의 수립

#### ○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는 5년마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부한 권고안을 존중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함.

##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이하 “지방인권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3.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4. 기업과 인권

###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됨.
-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과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 5. 인권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6. 인권의 날 지정

-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

## 7. 국제 협력과 민간단체 지원

- 국제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
-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III.

##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기업과 인권 논의

### 1. ‘기업과 인권’ 논의의 역사: 인권경영, CSR, ESG

-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이라는 의제가 대두된 것은 인권 논의의 역사와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sup>8)</sup>
  - 전통적으로 인권침해의 주요한 가해자는 국가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인권침해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경영이라는 표제 하에 논의가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그 첫 성과가 2003년 다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인데, 협약 체결 단계 까지 나가지는 못했음.
  - 1999년에는 기업, 시민사회,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가 출범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음 유엔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8) 상세한 내용은 이상수, 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 인권경영의 개념, 국제규범, 법제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 태학사, 2022; 이승협, 기업과 노동의 사회 책임 - CSR에서 ISO26000을 넘어 기업 인권으로, 집문당, 2020 참조.

## (인권)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경제개발 협력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976년에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의 일부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음.
- 2010년 11월에 제정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인 ‘ISO 26000’에는 인권과 노동관행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음.
- 1997년 설립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1999년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G1)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 문헌들을 참조한 인권에 대한 성과 지표가 담겨 있음.
  - 2002년에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G2)이, 그리고 2006년에는 세 번째 가이드라인(G3)이 발간되었음.
  - 현재 G3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인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 2005년 7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임명했고, 그에게 인권에 관한 다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기업책임기준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임무를 부여했음.

- 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 :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sup>9)</sup>를 채택했고, 2011년에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천기준안으로 채택했음.
- 존 러기 교수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1) 기업 등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2)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 3)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효과성 증진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국가의 기업과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sup>10)</sup>

○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권위가 기업과 인권(인권경영)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각종 문헌 번역<sup>11)</sup>, 연구교육자료 발간<sup>12)</sup>, 연구용역사업<sup>13)</sup>, 각종 학술행사<sup>14)</sup>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2016년 9월 인권위는 기업이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음.
- 2017년 7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인권위 권고 및 유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2020년 12월에는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
- 2021년 12월에는 인권위-법무부,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9) 국가인권위원회 역,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 워크의 실행, 2011.

10) 상세한 내용은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단국대), 제35권 제2호, 2011, 65-95쪽; 존 제러드 러기, 이상수 역, 기업과 인권, 필맥, 2014 참조.

11)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등.

12) 인권 경영의 이해, 2011;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입문, 2012; 기업 인권교육 표준교안, 2012; 인권경영 길라잡이, 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기업 인권교육 교재, 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등.

13)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과 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8;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2008; 기업과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 가진단도구개발 실태조사, 2009;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1;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2;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 2013;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 2015; 인권경영 우수사례 평가지표개발, 2015;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 2016;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2017;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0.

14) 인권위는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했음.



- 2022년 8월에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를 권고하면서,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를 포함했음. 여기에는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음.
  - 2022년 7월 인권위는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함.
- 이와는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 왔는데, 이는 기업이 이윤의 창출 뿐만 아니라, 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관계, 그리고 기타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여기에는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업체 노동자의 인권, 소비자의 인권,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었음.
- 최근에는 기업이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 중 사회적(social) 요소에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또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ESG의 핵심이 인권이라는 지적이나,<sup>15)</sup> ESG경영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음<sup>16)</sup>.

## 2. 인권정책기본법과 기업과 인권 논의

- 한국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를 촉발하고 이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15) “ESG, 핵심은 인권이다”(송세련 교수 인터뷰), 시사IN, 710호, 2021.

16) 국가인권위원회, 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 어젠다, 2022(E-book).

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기본법에 그 개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인권위는 2016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마련을 권고하면서 그 핵심 추진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음.

-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마련
-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함.
- 수출관련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
- 공공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개별기업의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함.

□ 또한 2022년 8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를 권고하면서, 제5장에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를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담았음.

- 기업의 인권경영·인권존중책임 실현
  -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 개선
  - 기업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 국가기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 강화
  -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 및 구제 제도 마련
  - 정부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 이러한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

- 위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가칭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법률”)
-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하는 방안: 영국과 호주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 및 스위스 「민사의무법」(개정안), 프랑스의 「실사법」, 노르웨이의 「투명성법」,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등<sup>17)</sup>

- 산업재해나 괴롭힘 등의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 2016년 제정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인권정책기본법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추미애 의원 법안에는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이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주는 직장 내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리고 2018년부터 제출된 법안에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7) 법무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 18-20쪽 참조.

〈각 법안의 ‘기업과 인권’ 규정 비교〉

	2018 인권위 인권기본법(안)	2020 정부 인권정책기본법(안)	2021 정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안), 2022 김영배의원 인권정책기본법(안) <sup>18)</sup>
기업의 책임	<p>제24조(기업등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등은 기업활동 및 국내외에 있는 공급망 기타 사업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등은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업등은 인권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규모, 실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국가· 지자체의 의무	<p>제2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의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8조(국가의 인권보호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기업의 인권경영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8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18) 두 법안은 조문 번호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함

	2018 인권위 인권기본법(안)	2020 정부 인권정책기본법(안)	2021 정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안), 2022 김영배의원 인권정책기본법(안) <sup>18)</sup>
인권경영 증진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경영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조달 절차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계약 등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등과 그 공급망에서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의 인권경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인권경영 평가 대상 기업등의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인권경영 증진) ① 정부는 인권경영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업이 인권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경영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기업의 인권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기업이 제17조에 따른 인권준중책임(이하 “인권준중책임”이라 한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li> <li>2.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li> </ol>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표준 마련, 제3항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 3. 기업과 인권 법제화를 위하여

□ 최근에 성안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기업과 인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의 법제화
-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국가/지자체의 인권보호 및 지원 의무 법제화
- 정부는 인권경영에 관한 지침이나 표준 마련 및 보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달 절차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계약 등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 등과 그 공급망에서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부는 인권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정부는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

□ 이러한 내용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정책이나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V.

## 결론

### 1. 인권정책기본법의 개요

- 그동안 발의되었던 인권정책기본법의 기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는 5년마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음.
-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

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 기업과 인권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해야 함.

#### □ 인권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장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 인권의 날 지정

-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

#### □ 국제 협력과 민간단체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 2.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의의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절차 및 국가인권정책 추진 절차의 법제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령)을 보완하고 입법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요 행위자들인 국가, 지자체, 인권위,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의 절차를 규정함.



- 특히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무부와 인권위 역할 분담을 명시함.
  - 그동안 임의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절차를 법제화함.
  - 논란이 되어 왔던 중앙행정기관과 인권위의 역할 분담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 추진 절차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의무 및 이행 절차의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자체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00년대 이후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도시운동을 통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제정하고, 인권위원회, 인권담당부서, 인권조사구제기구(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만 등) 등을 설치해 왔음.
  - 하지만 지자체 인권정책의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상위법의 부재가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지자체 인권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 인권정책이 임의적, 선택적,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법률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그동안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에 관한 논의가 인권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ESG경영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음.
  - 하지만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를 촉발하고 이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기업과 인권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나, 인권정책기본법에 그 개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인권정책기본법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음.
  -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전해온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여러 논의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인권 논의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배정, 조직 설치, 업무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인권교육 활성화의 계기 마련

- 국가·지자체/시민사회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인권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 3. 총평 및 향후 과제

- 1990년대 이후 인권 문제가 독자적 의제로 발전되어 왔으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태임.
  -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07년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2006년 법무부 인권국 설치, 2010년대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운동, 2010년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어온 인권교육,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왔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기업과 인권, 인권도시, 인권교육 등의 의제 등 1990년대 이후 인권 문제가 독자적 의제로 발전되어 왔으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음.<sup>19)</sup>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가 발전시켜온 NAP,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지자체 인권, 기업과 인권 등 인권 관련 성과들을 총결산하고, 동시에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정부, 인권위, 지자체 등에서 각각 발전시켜온 인권정책 수립·이행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선진 인권국가로 나아갈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경영 등의 논의를 거쳐 ‘기업과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적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인권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이행 절차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절차를 법제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며,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43권, 2014, 31-75쪽 참조.

□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이후, 인권정책이나 인권 관련 법령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된다면, 추후 인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sup>20)</sup>

□ 다만,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본법은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진 규범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나 조치를 취할 때 근거를 제시해주는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에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 거꾸로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긴 상당수의 내용은 굳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임.

- 인권행정, 기업과 인권, 지자체와 인권,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협력 등은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시행될 수 있는 과제임.

-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나가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

20) 이에 대해서는 홍성수,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제인 정부 5년", 인권연구, 4(1), 2021 참조.

## 참고문헌

## REFERENCES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유남영, “인권기본법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129호, 2012.
- 이상수, 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 인권경영의 개념, 국제규범, 법제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 태학사, 2022.
- 이승협, 기업과 노동의 사회 책임 - CSR에서 ISO26000을 넘어 기업 인권으로, 집문당, 2020.
- 정진성 외 2인,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존 제러드 러기, 이상수 역, 기업과 인권, 필맥, 2014.
- 홍성수, “국가의 인권제도와 기구”, 김종섭 외, 인권제도와 기구: 국제 사회·국가·지역 사회, 오름, 2018.
-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단국대), 제35권 제2호, 2011.
-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제58호, 2010.
-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2012.
-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제43권, 2014.
- 홍성수,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제인 정부 5년”, 인권연구, 제4권 제1호, 2021.
-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 국가인권위원회, 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 어젠다, 2022(E-book).
- 국가인권위원회 역,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 워크의 실행, 2011.
- 법무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
- “ESG, 핵심은 인권이다”(송세련 교수 인터뷰), 시사IN, 710호, 2021.

이슈페이퍼 22-19-③

## ESG 관점에서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과 의의

---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42-2 93360

